

##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신영민\*\*\*·황규성\*\*\*

### 요약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 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노동시간, 소득분위, 노동시간유형, 시간제, 계층화, 불평등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833).

\*\* 신영민.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 주저자(springofego@naver.com).

\*\*\*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교신저자(kyuseong.hwang@gmail.com).

## 1. 문제제기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삶의 질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 확대 등과 연동되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지만 낮은 임금수준과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성과보상체계, 연차휴가 및 교대제 근무, 직장 내 문화와 같은 제도 및 관행, 노동조합의 미약한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배규식, 2011a).

노동시간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 유력한 개념 중 하나가 노동시간 레짐(working time regime)이다. 이 개념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노동시간이 노사 간 협상이나 개인에 의하여 쉽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련된 규제와 관행, 제도, 문화에 따라 관성적으로 형성되고 국가 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Rubery et al., 1998; Fudge, 2006).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은 노동시간의 전반적 경향과 국가 간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국 수준에서 노동시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노동시간 레짐에는 노동시간에 담겨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숨어 있다. 물리적 양으로서의 시간은 계급·계층과 중립적일지 모르나 노동시간은 그렇지 않다. 시간에 담긴 사회적 의미는 계급·계층에 따라 차별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노동시간에도 투영되고 있다. 노동시간에 잠재된 불평등은 시간당 임금의 차이에서 보듯 소득과 노동시간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노동시간은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학력, 성별, 지위 및 계층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간 레짐은 각 계급·계층별 차별화와 결합시켜 파악할 때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글은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거시적 특성에 가려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노동시간의 계층화에 주목하여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노동시간을 임금소득과 결합함으로써 소득을 반영하여 노동시간을 유형화한다(3장). 둘째, 노동시간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한다(4장). 셋째, 노동시간 유형별로 계층별 노동시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5장).

## 2. 선행연구 검토

### 1) 평균 노동시간 중심 연구경향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1인당 연간 2,113 시간 동안 일하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의 2,228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일하는 국가다(OECD, 2016). 장시간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흐

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가 있다. 쇼어(Julit Schor)의 연구 이후 초기에는 경제발전에만 따른 노동시간의 증감이 주된 연구주제였다. 대체로 영미권 국가들이 유럽에 비하여 장시간 노동 경향을 보이기에 영미권의 연구경향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 분석과 여가 등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한국에서도 노동시간 연구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 원인과 단축 방안을 다루었다(최영기, 1991; 어수봉, 2007; 배규식, 2012).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건, 기업규모 및 일자리의 특성, 임금 및 고용조건 등이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근의 연구는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서에 해당한다(배규식 외, 2011a, 2011b; 배규식 2012). 선행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체제의 요인들로 지목된 것은 전일제 노동 및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고용체제, 저숙련·저임금의 생산체제, 노동시간에 대하여 느슨한 사회적 규범, 교대제 근무·연차휴가·휴가수당·포괄임금제 등의 노동관련 제도들, 현시주의(presentism)나 대면중심(face-to-face) 관리와 경영, 부족한 노동시간 계획성과 같은 문화·규범적 요소, 짧은 역사의 노동시간 입법과 비대칭적인 노사 간 권력자원 등이다(김성희, 2002; 배규식, 2011a).

둘째, 노동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해외 연구에서도 흔히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Schmid 1998; Figart & Mutari 2000). 이런 연구경향도 노동시간과 여가,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의 관계, 젠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인이 희망하는 노동시간과 실노동시간, 임금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실노동시간이 희망노동시간보다 긴 “과잉노동상태”의 노동자가 “과소노동”보다 더 많으며, 저임금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기에 “과잉노동” 역시도 시간당임금이 낮은 경우에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임금감소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김준영·안준기, 2014). 개인 혹은 가계 관점에서 부부의 장시간 노동이 가사노동의 분담과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었으며(유성용 2008; 김진옥·고은주, 2014), 남성 생계 부양자 중심의 가족제도와 남녀 간 일자리 수준의 격차는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격차가 심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분담은 여전히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승택·이상민(2008), 남성일(2002), 백웅기·오완근(2003), 정준구·박기찬·정재훈(2009) 등의 연구는 노동시간단축이 갖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기업의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시간단축이 생산 및 직무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보다 효과가 미비하고 임금의 조정이 없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직무성과, 투자에서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가 확대와 내수 진작이 가능함에 따라 그 부정적 효과가 점차로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시적이고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보다 단계적인 단축 및 연차휴가 등 제도적인 동시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고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유럽의 경우 고용위기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Böckerman & Kiander 2002; Seifert, 1991; Hunt, 1999), 노동시간 단축을 이끈 사회정책의 경로와 사회협약의 내용(Hinrichs et al., 1991; Bosch 1994; Schmid 1997),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수량적 유연화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다루어졌다(Reilly, 2001).

국내의 연구 중에서도 안주엽·이규용(2001), 김재원(2000), 남성일(2002), 서승환·박영범(2003), 어수봉(2007), 김유선(2008) 등의 연구는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유선(2008), 안주엽·이규용(2001)의 연구가 노동시간단축에 따라 고용의 증가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은 반면, 남성일(2002)과 김재원(2000)은 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며, 서승환·박영범(2003)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고용증가의 정책적 효과는 세출증가나 콜금리 인하에 비하여 미비하다고 보고 있고, 어수봉의 경우는 유보적인 견해를 보인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는 것은 각각의 연구가 선택한 개념적 정의나 분석기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산업 별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다르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조정 여부가 다르게 가정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는 지점과 결론은 다소 편차가 있지만 ‘평균 노동시간 내지 ‘일반적인 장시간 노동 경향에 초점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균 노동시간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였지만 노동시간에 함축된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 2) 불평등 체제로서의 한국 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간 연구는 노동시간에 농축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한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평균 노동시간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이중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이중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이건, 2001; 김유선, 2004; 이호근, 2013; 장지연·이병희, 2013). 한국의 노동시장은 남성전일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형 일자리 간의 이중화가 심각하고, 노동과 임금, 사회보장의 격차가 크며, 노동시장에서의 진출입과 이직이 쉽

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이종구, 2005; 이호근, 2005). 무엇보다 비정형 일자리가 정규직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보완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을 저렴한 비용에서 대체하기 위한 형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정이환, 2002),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노동시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채우는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시간제 노동도 노동시장의 외부자로서 복지제도 적용과 시간당 임금에 있어 전일제 노동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유사하게 시간제 노동의 유형 대다수가 비정규일자리(non-standard)의 일종으로 노동시간이 임금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 정규직 일자리와의 차별이 크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교차시키면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단축시간의 상당 부분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일 수 있다는 점을 추측 가능케 한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5: 41).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는 임금,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여부, 복지제도 적용 등 다양하게 논의 되어 왔지만 이렇듯 노동시간 자체에서 불평등 구조를 받아 안고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화는 노동시간에도 투영되는 동시에, 계층화의 심화는 노동시간의 계층화 역시 초래할 수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총량적 접근으로는 노동시간에 반영된 불평등을 포착하기 어렵다.

둘째, 노동공급의 이질성이다. 평균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계층별, 성별로 노동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규명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실증 분석에 있어 국외자(outliner)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Handcock & Morris, 1999), 노동시간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소득 계층이나 고소득 계층과 같은 양 극단에 위치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질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의 질은 개인이 접근 가능한 인적자본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시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노동공급에는 학력, 성별과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지위 및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 단체협약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평균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문제에 접근하면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집단별로 차별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셋째, 노동시간의 불평등에 주목하지 않고 일률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한다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노동시간의 분포를 살피는 것은 노동시간단축에 관련된 사회정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소득 및 성별, 학력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이는 임금의 조정 가능성, 개인의 인적자본에 따라 접근 가능한 일자리의 질에 따라 효과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노동시

간정책을 생산하는데 있어 주목할 것은 노동시간의 전반적인 경향보다 계층 간, 개인의 인적자본 간 발생하는 노동시간 차이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의 평균적 변화가 아닌 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간의 관계,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Jacobs & Gerson, 1998). 해외에서는 노동시간의 유형화와 성별, 인종, 계급 별 노동시간의 분포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Messenger, 2004). 물론 노동시간에 불평등을 접목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김성희(2001), 김원식(2004) 등의 연구는 국내의 노동시간단축이 비정규 고용 문제, 기업 간 격차의 발생과 갖는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배규식의 경우 초과 근로 및 장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소득이 낮은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임금을 벌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배규식 2013a : 63-68).

그러나 이 글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 노동시간의 ‘외부’에 있는 불평등이 아니라 노동시간 ‘내부’에 있는 불평등에 주목한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장유미(2014)의 연구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복지패널의 가구자료를 토대로 노동시간과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양자간에 높은 상관성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우상향의 형태를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가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 여가를 즐기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는 소득과 노동시간에 관한 선형(linear) 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의 수준에 따라 노동시간이 후방굴절 된다면 소득과 노동시간 간의 관계는 직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소득별로 노동시간의 변화를 구분하고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동시간의 유형 분류를 통하여 주변적 시간제 노동(marginal part-time working), 시간제 노동(part-time working), 표준시간 노동(standard working-time), 장시간 노동(longtime working)으로 구분하여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주변적시간제 노동은 주당 15~20시간의 초단시간 노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자리는 노동자의 선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고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강요되고(Fagan, 2001; 253). 따라서 대체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거나 고용안정성 및 사회보험의 수급에서도 차별을 받는 “외부자 집단의 외부자”들이다(Hakim, 1997).

1) 물론 노동시간의 유형화 내지 분류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Lee(2004)의 연구는 개별 노동자의 실질노동시간과 희망노동시간 간의 미스매치를 기준으로 노동시간 격차를 “희망노동시간 이상으로 노동을 하는 노동시간 흑자(surplus)”인 경우와 “희망노동시간보다 덜 노동하는 적자(deficit)”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후자의 한 사례로 주변적시간제 노동을 제시하는데, 주당 20시간 이하의 노동을 주변적 시간제 노동의 경계로 설정하는 반면, Anxo(2004)의 경우는 15시간 이하의 노동을 주변적시간제 노동의 경계로 설정한다(Messenger, 2004). 노동시간의 미스매치를 기준으로 한 국내연구는 김준영·안준기(2014)를 참조.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에 비하여 열악한 외부자일수도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 운동과 선택적 시간제의 개념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개인의 노동시간 선택권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자리인 경우도 있다. 때문에 국제비교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전일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력과 그 외의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력 간의 편차가 크고, 따라서 전일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 간에 노동시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처음에 있어 차이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이종구 2005, 이호근 2005). 따라서 노동시장의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도 열악한 시간제가 많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표준노동시간의 경우 국제비교의 측면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동시에 대체로 고학력 남성의 전일제 일자리가 표준노동시간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정규직은 대체로 주당 36시간에서 54시간 내의 노동시간 분포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44시간에서 70시간 내의 분포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일자리가 표준노동시간대의 노동을 보인다(김성희 2002: 23).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의 경우 표준시간 노동에 비하여 열악한 일자리이다. 국내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표준시간 노동에 비하여 열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중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ILO의 기준에 따르면 주당 48시간 이상의 노동은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된다(배규식, 2011a). OECD 국가 간 비교에서는 선진국의 경제발전 수준 등이 고려되어 43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예를 들어 Anxo 2004), 장시간 노동체제의 특성상 48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으로 정의하여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 비중은 높다(McCann & Messenger, 2007). 2007년과 2009년의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장시간 근로는 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동시에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편이다(배규식 2011a, 40:52).

노동시간의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되 한국의 특징을 반영하여 주당 15시간미만의 주변적 시간제 일자리, 15시간이상에서 35시간미만의 시간제 일자리, 35시간 이상에서 48시간미만의 표준 노동시간, 48시간 이상의 장시간 일자리로 구별했다. 주변적시간제의 경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준이 월 60시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주당 15시간미만의 노동을 한계적 시간제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장시간 노동은 ILO가 제시하는 장시간 노동의 기준과 장시간 노동체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당 48시간 이상의 노동을 장시간으로 분류했다.

### 3. 임금소득을 반영한 노동시간 유형화

#### 1)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노동패널)의 1998~2014년 자료를 활용했다. 노동패널에서 노동시간은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지난 1주일의 평균 노동시간”을 측정하며 정상노동시간과 초과노동시간을 포함한 주당평균노동시간이 측정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소득자만 추출한 77,513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주변적 시간제 노동을 1로 하여 4까지 값을 부여 하였다(노동시간 유형별 분포는 [표 1] 참조). 임금소득은 “한 달 평균 월 임금”을 묻는 항목을 “개인의 임금소득”으로 정의하고 5분위로 나누었다.<sup>2)</sup>

[표 1] 노동시간 유형별 분포, 1998~2014(개인소득 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77	97	106	150	111	121	84	66	88
2	243	231	213	219	232	247	307	276	273
3	1,609	1,423	1,383	1,464	1,628	1,668	1,867	1,964	2,151
4	2,008	2,155	2,006	1,948	1,962	2,128	1,956	1,754	1,762
계	3,937	3,906	3,708	3,781	3,933	4,164	4,214	4,060	4,27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	94	62	105	107	116	104	128	148	1764
2	276	279	370	380	382	440	418	418	5204
3	2,232	2,274	2,906	2,924	3,148	3,418	3,492	3,404	3,9855
4	1,725	1,710	1,797	1,858	1,703	1,472	1,408	1,338	3,0690
계	4,327	4,325	5,178	5,269	5,349	5,434	5,446	5,308	77,513

1 : 주변적 시간제(<15h), 2 : 시간제(15h~35h), 3 : 표준시간(35h~48h), 4 : 장시간(48h<)

노동시간과 소득계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 분포 접근법(Relative Distribution Methods)을 채택했다. 상대적 분포 접근법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 평균적 경향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기준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의 계급별 상대적인 분포를 통하여 집단 간 변수의 차이를 살핀다

2) 상대분포 접근으로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편의를 위해 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누는 결과는 5분위로 나누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Handcock & Morris, 1999). 상대분포를 중심으로 한 접근은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확률질량 함수(Probability Mass Function)를 구하여 상대적 분포로 변환시킨다. 여기에서는 소득 1분위를 기준집단으로 삼고 각 소득분위의 노동시간 유형들을 상대적 분포로 구했다. 즉, 특정시점  $t$ 에서 기준 집단인 소득 1분위의 노동시간을  $y_{1t,i}$ 라고 하고, 비교집단인 각 소득분위의 노동시간  $y_{nt,i}$ ( $n$ 은 각 소득분위,  $i$ 는 노동시간의 네 가지 유형)이라고 할 때,  $f_{1t}(\cdot)$ 는 해당년도 소득 1분위의 노동시간 분포 질량함수,  $f_{nt}(\cdot)$ 는 동년도 각 소득 집단의 분포질량함수이다. 소득 1분위와 각 소득집단 간의 노동시간의 상대적 분포는  $Rd(y_{1t,i}, y_{nt,i})$ 가 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d(y_{1t}, y_{nt}) = \frac{f_{nt}(y_{1t})}{f_{1t}(y_{1t})}, (Rd \geq 0)$$

위와 같은 상대분포 함수에서 분자 부분( $f_{nt}(y_{1t})$ )은 소득 1분위를 기준(=1)으로 할 때 각 소득분위의 노동시간 분포이므로 비교집단인 각 소득분위의 상대적 빈도가 1분위보다 높은 경우 1이상의 값을, 동일한 빈도라면 1의 값을, 낮은 경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 2) 노동시간의 계층별 상대분포

분석에 앞서 임금소득과 노동시간이 맺는 관계의 일반적 경향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중간소득 계층은 평균보다 길게, 1분위와 5분위는 짧게 일하고 있다. 개인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할수록 주당평균노동시간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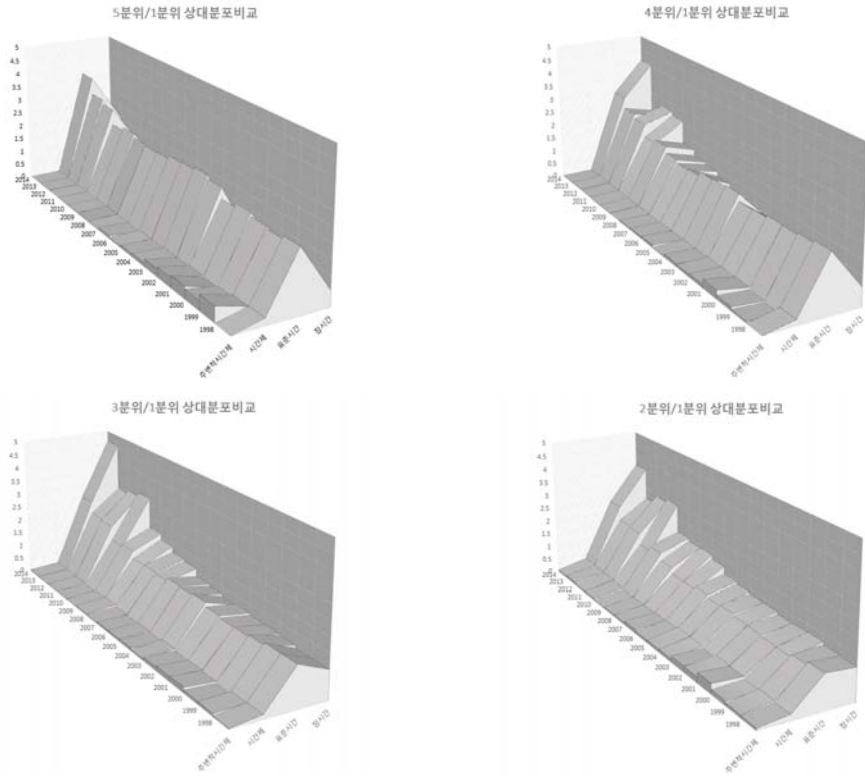
[표 2] 소득분위별 주당 평균노동시간(월 임금 기준)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개인 임금소득	40.01	49.54	49.39	47.48	44.32	46.15
개인 시간당 임금	53.41	48.32	46.01	43.40	37.99	45.83

주: 조사기간(1998-2014)의 평균값임.

개인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998년에서 2014년까지 소득 1분위에 대한 각 소득분위의 노동시간 유형별 상대분포를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며, 상대분포의 각 수치는 [표 3]에서 제시했다.

[그림 1] 소득분위별 노동시간유형의 상대분포(1998-201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소득1분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든 소득분위에서 주변적 시간제 노동과 시간제 노동의 빈도가 낮다. 소득분위별 주변적 시간제 노동과 시간제 노동의 빈도는 대체로 0.5미만이다. 주변적 시간제 노동과 시간제 노동은 소득 최하위 20%의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특징이다.

[표 3] 임금소득 분위별 노동시간 상대분포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5/1분위	(1)	0.000	0.844	0.637	1.487	0.973	0.874	0.417	0.402	0.369
	(2)	0.652	0.607	0.551	0.818	0.441	0.192	0.319	0.141	0.211
	(3)	2.174	2.189	1.964	2.206	2.190	2.285	2.517	2.189	2.133
	(4)	0.426	0.498	0.637	0.451	0.505	0.550	0.463	0.518	0.493
4/1분위	(1)	0.338	0.379	0.973	0.434	0.270	0.332	0.502	0.630	0.310
	(2)	0.696	0.409	0.511	0.443	0.520	0.413	0.296	0.311	0.390
	(3)	1.677	1.928	1.814	2.196	1.945	1.847	2.004	1.780	1.634
	(4)	0.688	0.671	0.692	0.600	0.674	0.763	0.719	0.719	0.790
3/1분위	(1)	0.175	0.791	0.443	0.465	0.580	0.413	0.491	0.351	0.495
	(2)	0.635	0.451	0.287	0.387	0.351	0.352	0.414	0.374	0.346
	(3)	1.519	1.518	1.619	1.687	1.620	1.654	1.632	1.466	1.494
	(4)	0.798	0.840	0.850	0.828	0.838	0.861	0.873	0.919	0.886
2/1분위	(1)	0.378	0.814	0.615	0.643	0.298	0.483	0.510	0.404	0.719
	(2)	0.627	0.477	0.446	0.613	0.522	0.560	0.515	0.453	0.404
	(3)	1.275	1.273	1.374	1.446	1.231	1.117	1.248	1.152	1.168
	(4)	0.928	0.951	0.931	0.888	1.027	1.072	1.036	1.096	1.077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5/1분위	(1)	0.268	0.093	0.242	0.120	0.197	0.136	0.108	0.102	0.428
	(2)	0.154	0.233	0.284	0.226	0.162	0.182	0.201	0.185	0.327
	(3)	2.114	2.420	2.026	2.012	1.997	1.969	2.074	2.151	2.153
	(4)	0.532	0.456	0.437	0.605	0.534	0.583	0.583	0.586	0.521
4/1분위	(1)	0.436	0.326	0.243	0.172	0.228	0.143	0.142	0.076	0.349
	(2)	0.275	0.270	0.416	0.284	0.273	0.250	0.240	0.264	0.368
	(3)	1.712	1.854	1.533	1.736	1.541	1.650	1.793	1.808	1.791
	(4)	0.772	0.766	0.821	0.810	0.963	0.931	0.885	0.960	0.778
3/1분위	(1)	0.455	0.244	0.270	0.129	0.158	0.172	0.178	0.173	0.352
	(2)	0.363	0.414	0.410	0.326	0.376	0.327	0.388	0.370	0.387
	(3)	1.380	1.582	1.444	1.521	1.444	1.548	1.606	1.674	1.553
	(4)	0.986	0.893	0.897	0.984	1.027	0.996	0.993	1.002	0.910
2/1분위	(1)	0.410	0.272	0.254	0.191	0.162	0.249	0.096	0.211	0.395
	(2)	0.400	0.395	0.560	0.473	0.383	0.416	0.365	0.441	0.473
	(3)	1.159	1.399	1.223	1.321	1.200	1.275	1.439	1.393	1.276
	(4)	1.142	1.006	1.041	1.084	1.287	1.255	1.242	1.277	1.079

(1) : 주번적 시간제(<15h), (2) : 시간제(15h~35h), (3) : 표준시간(35h~48h), (4) : 장시간(48h<)

둘째, 소득 5분위의 경우 표준시간 노동의 상대 분포 값이 높다. 소득 5분위와 1분위의 상대분포 비교에서 표준시간 노동은 1998년의 경우 2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연도에서도 최대 2에서 2.5이상으로, 이는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하여 표준시간의 노동을 하는 빈도가 2~2.5배 이상이라는 뜻이다. 반면에 장시간 노동은 대체로 1이하로, 소득 1분위에 비해 5분위가 장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낮다. 표준시간 노동은 소득 5분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상대빈도가 모든 분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1차 년도인 1998년의 경우 2분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3-5소득분위는 1분위에 비하여 표준시간의 상대빈도는 장시간 노동의 상대빈도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장시간 노동의 상대분포 값이 증가하여 2014년의 경우 소득 5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장시간 노동의 상대분포 값이 표준시간 노동보다 크다. 따라서 중위소득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특징적이다. 즉 시각적으로 처리한 상대분포 그래프를 통하여 임금소득 상위 20%의 표준시간 노동, 중위 60%의 장시간 노동, 하위 20%의 단시간 노동이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는 장시간노동의 상대분포 증가가 장시간노동 사례 자체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소득분위별 노동시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상대빈도 분석이 각 소득분위와 소득1분위 간의 상대빈도 비교라면 [그림 2]는 한 소득분위 내에서 특정한 노동시간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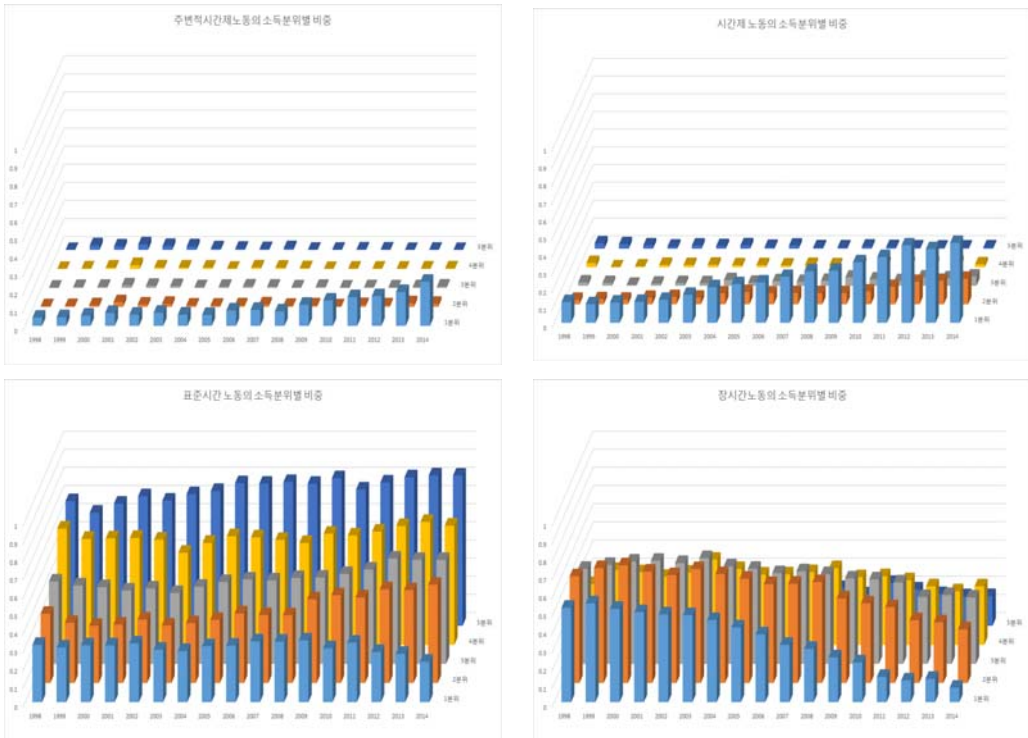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주변적 시간제 및 시간제 노동은 소득 하위 20%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시간 노동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상위 20%에 두드러지며 하위 20%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장시간노동은 소득 하위 2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분위와 표준노동시간 종사 간에 일정한 관계가 관찰된다. 임금소득 상위 20%는 관측대상의 80% 이상이 표준시간 동안 일하지만 그 비율은 소득분위가 하락할수록 점차로 감소한다. (주변적) 시간제 노동은 주로 소득 1분위에서 관찰된다. 소득1분위의 경우 주변적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2014년에 약 24%이며, 시간제 노동의 경우 소득 1분위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45% 정도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장시간 노동레짐의 특성상 모든 소득분위에서 장시간 노동과 표준시간 노동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경향은 2~4분위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물론 장시간 노동을 주로 하는 계층과 표준시간 노동을 하는 계층의 경

3) [그림 1]은  $\frac{f_{nt}(y_1)}{f_{0t}(y_1)}$ 에 의한 것이지만 [그림 2]는  $\frac{(y_{nt,i})}{(y_{nt})} * 100$ 에 따라 시각화 한 것이다.

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의 40%, 많게는 2분위까지의 60% 정도가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노동시간 유형별 임금소득 계층의 분포(1998-2014).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

지금까지의 관찰을 토대로 노동시간과 소득계층을 결합하면 ① 주변적 시간제 및 시간제의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로 구성된 유형 I ② 장시간 노동에 주로 종사하는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의 유형 II ③ 표준시간 노동을 주로 하는 소득 5분위의 유형 III으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다.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하나의 체계적 현상이라면 이런 현상을 낳는 요인은 무엇일까?

## 4. 노동시간 유형의 결정 요인

### 1) 분석방법

3장과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의 1차년도(1998년)에서 17차년도(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3장에서 분석한 소득 5분위(개인의 임금소득 기준)와 연속형 변수인 임금액의 자연대수 값을 포함하여 두 모형의 계수와 유의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시간당 임금으로 소득을 구분할 경우 저임금 계층에서 장시간 노동의 경향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시간당임금 역시 분석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수는 3장에서 살펴 본 ‘노동시간 유형’이지만 저소득층에서 주변적 시간제 및 시간제의 상대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적 시간제와 시간제의 두 유형을 묶어 시간제로 정의해 총 시간제, 표준 시간, 장시간의 세 범주로 분류했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과 연령, 성별, 학력을 포함시켰다. 이 중 연령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 시간제일자리가 청년층과 노년층에 주로 분포하여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기에 연령제곱항 역시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관계를 살폈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간 유형에 대하여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과 직업구분(6차)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에 대기업 중심의 시장지배구조라는 한국 산업화의 내적인 특성과 IMF이후의 노동시장 조정이라는 외적 특성 중 어떠한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각각의 대리변수로 기업체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라는 변수를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총 세 가지의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4 참조).

노동패널 자료가 개체(개인)의 시계열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패널 자료이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이므로 패널 다항로짓 분석(Panel Multinomial logistic-regression)을 적용했다. 분석에 앞서 개체 간 이질성을 의미하는 오차항( $u_i$ )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것인지, 고정된 모수로 볼 것인지에 따라 모형을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에 앞서 노동시간의 유형을 주변적시간제와 그렇지 않은 노동시간형태의 이항변수로 변환한 뒤 실시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  $cov(x, u_i) = 0$ 라는 귀무가설을 1%수준에서 기각하였기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패널 다항로짓 분석을 하였다.

[표 4] 변수의 정의와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설명	조작적 정의	비고	
독립 변수	모형1	소득분위	개인의 월 평균 임금을 추출하여 5분위로 나눔	범주형
	모형2	근로소득	개인의 월 평균 임금(단위: 만 원)에 자연대수를 취함	연속형
	모형3	시간당 임금	개인의 월평균임금/(주당노동시간*4)	연속형
종속 변수	노동시간 유형	시간제 - 주당평균노동시간 35시간 미만: 1 표준시간 - 35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2 장시간 - 48시간 이상: 3	범주형	
통제 변수	연령	개인의 연령		연속형
	연령제공	(개인의 연령)의 제곱		연속형
	성별	남성 = 1, 여성 = 2 ※ 분석에서는 여성을 기준으로 남성의 계수를 해석		범주형
	교육 수준	고졸이하 = 1, 전문대졸/대재 혹은 중퇴 = 2,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 3 ※ 분석에서는 4년제 이상 졸업자를 기준으로 계수를 해석		범주형
	산업	제조업=1, 건설 및 기반시설산업=2, 도소매/유통/통신/숙박/음식점업=3, 금융/보험/부동산/장비대여업=4, IT/연구개발/전문서비스업=5, 사업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6, 교육서비스=7,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8 ※ 분석에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석		범주형
	직업	임원/고위관리자/전문가=1, 준전문가/기술공=2, 사무직=3, 고객서비스/서비스직=4, 판매직=5, 숙련직/기능직=6, 단순노무=7 ※ 분석에서는 단순노무직을 기준으로 해석		범주형
	기업 규모	30인미만(소규모) = 1 30~299인(중규모) = 2 300인 이상(대규모) = 3		범주형
	직위	정규직=1, 비정규직(임시직 및 일용직)=2 ※ 분석에서는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석		범주형

고정효과 다항로지트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조건부 최우추정(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 두 번째는 종속변수를 두 개씩 짝지어 패널이항로지트모형을 반복 추정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형(hybrid model)이다(민인식 2010, 민인식, 최필선 2012).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방법인 하이브리드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하이브리드 모형은 각각의 시간가변 변수에 대해서 개체 내 요소와 개체 간 요소로 분해하여 최적화하

는 것으로, within 변환과 between 변환을 실행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든 후 횡단면 다항로짓으로 추정하기에 성별 및 학력과 같은 시간불변변수의 추정계수를 얻을 수 있고 자유도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robust 표준오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포함한다. 즉 다음과 같은 추정식이 이용되며, within 변환에 해당하는 계수를 해석한다.<sup>4)</sup>

$$\log\left(\frac{p_{it}^s}{p_{it}^{base}}\right) = \beta_0^s + \beta_{1D}^s Dx_{it} + \beta_{2M}^s Mx_i, \quad Dx_{it} = (x_{it} - \bar{x}_i) \text{ and } Mx_i = \bar{x}_i$$

## 2) 분석결과

[표 5]와 [표 6]은 노동시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소득의 영향은 3장에서 살펴본 상대빈도 분석의 결과와 같다. 모형1에서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시간제를 할 확률보다 장시간노동을 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장시간보다는 표준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제보다 표준시간을 할 확률 역시 증가하였다. 다만 3장에서도 나타났듯 2분위는 1분위에 비하여 표준시간보다 장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모형2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월임금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시간제 노동보다 장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증가하고 표준시간의 노동을 할 확률이 장시간 노동을 할 확률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표준시간>장시간>시간제 유형에 속할 확률의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할 경우(모형3) 시간제>표준시간>장시간의 순을 보였다. 즉 (시간당) 임금이 증가할 경우 장시간 노동보다 표준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높지만, 시간제와 관련된 선택확률에 있어서 월 임금으로는 장시간보다는 시간제가 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시간당 임금으로는 시간제보다 긴 시간의 노동을 할 확률이 높다.

4) 하이브리드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민인식·최필선(2012, 203-209)를 참조.

[표 5] 패널다항로지분석의 기술통계량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고	
종속 변수	노동 시간 유형	(주변적)시간제	5,901(8.49)	2.3067	.6184	1	3	
		표준시간	36,378(52.35)					
		장시간	27,217(39.16)					
독립 변수	소득 분위	1분위	13,763(19.80)	2.9928	1.3987	1	5	
		2분위	14,010(20.16)					
		3분위	13,616(19.59)					
		4분위	15,177(21.84)					
		5분위	12,930(18.61)					
개인근로소득		69,496	4.9733	.6725	.6931	8.6125		
변수	연령		69,496	40.3070	11.7289	15	85	N= 57,598 n= 11,893 T-bar= 5.8434
	성별	남성	42,275(60.83)	1.3917	.4881	1	2	
		여성	27,221(39.17)					
	교육 수준	고졸이하	13,140(18.91)	2.4114	.7876	1	3	
		대재혹은중퇴	14,620(21.04)					
		전문대졸이상	41,724(60.05)					
	산업	제조업	18,488(26.60)	3.4705	2.2422	1	8	
		건설/기반시설	7,954(11.45)					
		도소매/유통/통신/숙박/음식점	17,255(24.83)					
		금융/보험/부동산/장비대여	5,492(7.90)					
		IT/연구개발/전문서비스	3,713(5.34)					
		사업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	5,994(8.62)					
		교육서비스	6,269(9.02)					
	보건/의료/사회복지	4,331(6.23)						
	직업	임원/고위관리자/전문가	10,111(15.84)	4.1687	2.0784	1	7	
		준전문가/기술공	6,657(9.58)					
		사무직	12,590(18.12)					
고객서비스/서비스직		6,105(8.78)						
판매종사자		4,674(6.73)						
숙련직/기능직		19,391(27.90)						
단순노무		9,068(13.05)						
기업 규모	소규모(30인 미만)	27,491(47.72)	1.8786	.9046	1	3		
	중규모(30~299인)	15,622(27.12)						
	대규모(300인 이상)	14,496(25.16)						
직위	정규직	53,588(77.11)	1.2289	.4201	1	2		
	비정규직	15,908(22.89)						

1) 사례수의 ()는 명목변수의 백분율임.

[표 6] 개인의 임금소득분위가 노동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노동시간유형		모형1			모형2			모형3		
기준범주		장시간	표준시간	표준시간	장시간	표준시간	표준시간	장시간	표준시간	표준시간
비교범주		시간제	표준시간	시간제	시간제	표준시간	시간제	시간제	표준시간	시간제
소득 (1분위)	5분위	-2.436** (.170)	.941** (.066)	-3.378** (.168)						
	4분위	-2.639** (.108)	.382** (.053)	-3.021** (.108)						
	3분위	-2.343** (.084)	.036 (.046)	-2.378** (.084)						
	2분위	-1.736** (.062)	-.182** (.042)	-1.554** (.063)						
월임금 (자연로그)					-2.750** (.090)	.020* (.047)	-2.767** (.094)			
시간당임금 (자연로그)								4.478** (.107)	2.736** (.055)	1.741** (.088)
연령		.133** (.027)	.078** (.015)	.055 (.027)	.305** (.029)	.168** (.016)	.137** (.029)	-.625** (.033)	-.218** (.017)	-.407** (.030)
연령제곱항		-.000 (.000)	-4.38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1* (.000)	.005** (.000)	.002** (.000)	.003** (.000)
성별 (여성)	남성	-.448** (.075)	-.701** (.041)	.253** (.075)	-.292** (.078)	-.834** (.044)	.542** (.079)	-2.052** (.089)	-1.364** (.046)	-.688** (.081)
학력 (전문 대졸 이상)	고졸이하	-.523** (.088)	-.349** (.054)	-.174 (.088)	-.500** (.087)	-.278** (.055)	-.222* (.088)	.168 (.106)	-.003 (.058)	.172 (.097)
	대재/중퇴	.268** (.075)	.129** (.040)	.139 (.072)	.150 (.078)	.113** (.040)	.037 (.076)	.277** (.350)	.120** (.041)	.157 (.072)
산업 (제조업)	건설/기반시설	1.391** (.115)	-.356** (.061)	1.748** (.113)	1.636** (.123)	-.376** (.060)	2.013** (.122)	.501** (.123)	-.565** (.062)	1.067** (.112)
	도소매/유통/통신/숙박/음식점	.427** (.113)	-.747** (.047)	1.175** (.112)	.560** (.117)	-.760** (.047)	1.319** (.117)	.128 (.122)	-.719** (.049)	.847** (.115)
	금융/보험/부동산/장비대여	.586** (.156)	.216** (.071)	.369 (.155)	.727** (.157)	.200** (.072)	.526** (.158)	.473** (.162)	.301** (.080)	.171 (.149)
	IT/연구개발/전문서비스	.884** (.217)	.577** (.074)	.307 (.209)	1.019** (.217)	.569** (.073)	.451* (.213)	.583* (.232)	.512** (.078)	.071 (.149)
	사업서비스/공공행정서비스	1.121** (.148)	.312** (.091)	.809** (.144)	1.217** (.154)	.292** (.091)	.925** (.153)	.997** (.163)	.339** (.095)	.658** (.148)
	교육서비스	2.646** (.143)	.364** (.084)	2.282** (.135)	2.726** (.144)	.346** (.085)	2.230** (.139)	2.693** (.154)	.423** (.088)	2.270** (.136)
	보건/의료/사회복지	.769** (.154)	-.087 (.077)	.857** (.144)	.783** (.158)	-.151* (.077)	.934** (.151)	.664** (.165)	-.125 (.083)	.790** (.146)

[표 6] 개인의 임금소득분위가 노동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 (표 계속)

종속변수: 노동시간유형		모형1			모형2			모형3		
직업 (단순 노무)	임원/고위관리직/ 전문직	1.177** (.146)	.761** (.079)	.416** (.146)	1.557** (.148)	.669** (.081)	.887** (.150)	-1.027** (.161)	-.180 (.084)	-.847** (.150)
	관리직/ 준전문직/기술직	.705** (.143)	.785** (.077)	-.079 (.143)	.849** (.148)	.698** (.078)	.151 (.150)	-.763** (.156)	.121 (.081)	-.884** (.147)
	사무직	.083 (.145)	.943** (.069)	-.860** (.146)	.293 (.147)	.865** (.070)	-.572** (.148)	-1.376** (.160)	.244** (.072)	-1.620** (.152)
	고객서비스/ 서비스직	.275* (.114)	.100 (.075)	.175 (.119)	.343** (.115)	.039 (.078)	.303* (.121)	-.452** (.129)	-.302** (.079)	-.150 (.121)
	판매직	.168 (.134)	-.283** (.081)	.451** (.119)	.170 (.133)	-.332** (.083)	.502** (.141)	-.487** (.146)	-.652** (.086)	.165 (.139)
	숙련직/기능직	.198 (.104)	.222** (.063)	-.025 (.105)	.222 (.106)	.167** (.064)	.054 (.109)	-.730** (.130)	-.180** (.066)	-.550** (.111)
기업 규모	중규모 (30-299인)	-.245** (.069)	.534** (.033)	-.779** (.068)	-.187** (.073)	.529** (.033)	-.716** (.072)	-.696** (.073)	.360** (.035)	-1.056** (.069)
	대규모 (300인 이상)	.585** (.077)	1.042** (.040)	-.457** (.074)	.747** (.080)	1.021** (.040)	-.275** (.078)	-.373** (.084)	.564** (.042)	-.937** (.077)
지위 (비정 규직)	정규직	-1.627** (.069)	-.237** (.042)	-1.389** (.062)	-1.368** (.065)	-.264** (.043)	-1.104** (.064)	-2.424** (.076)	-.530** (.046)	-1.894** (.067)
상수항		-2.023** (.358)	.140 (.212)	-2.164** (.346)	4.818** (.451)	-3.010** (.252)	7.829** (.472)	4.548** (.447)	4.256** (.244)	.292 (.398)
Number of obs		57,598								
Wald Chi2(df)(p)		8292.01(54)(.0000)			7509.10(50)(.0000)			9406.18(50)(.0000)		
Pseudo R2		.2179			.2307			.2922		
Log pseudo-likelihood		-40228.603			-39565.272			-36405.201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 1%수준에서 유의, \* : 5%수준에서 유의

이는 한국의 경우 시간과 임금의 불비례성이 커서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가 휴일근로나 야간 근로의 형태로 긴 시간을 일해 소득을 벌충하여 월임금 기준의 중위소득으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 중심의 노동시간체제에서 채 10%가 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 계층이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계층보다 근소하게 높아 시간당임금의 층위와 월임금의 층위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일자리 유형별 시간당 임금과 주당평균 노동시간, 월임금액을 비교한 [표 7]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7] 노동시간 유형별 시간당 임금, 주당평균노동시간, 월임금액의 차이

시간당 임금의 단위 ; 만 원				
	시간당임금	주당평균노동시간	월임금액(계산)	월임금액(실제)
시간제	1.165	21.73	101.248	82.898
표준시간	1.320	41.39	218.534	216.940
장시간	.668	58.27	155.705	149.591

출처: 노동패널을 토대로 직접 계산. 해당수치는 조사기간(1998-2014)의 평균값임.

분석결과 노동시간의 삼분할 체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형1,2와 3에서 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계수의 차이는 ① 장시간노동 중심, 낮은 시간제 비율의 노동시간레짐 특성 ② 노동시간 유형 및 일자리 특성에 따라 큰 임금격차와 노동시간 분포, ③ 낮은 시간당임금을 장시간 노동을 통해 벌충하는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

통제변수 중 계수의 부호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변수들은 이러한 불일치가 반영되는 요소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과 중간수준 학력, 산업, 기업규모, 종사상 지위에서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장시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재학 내지 중퇴의 중간수준 학력 역시 고학력자에 비하여 장시간>표준시간>시간제 순으로 노동시간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이는 대체로 중간수준 학력자의 연령이나 기혼여부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합한다.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장시간 노동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원강사나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사업서비스나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의료·복지분야의 경우는 시간제 노동의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도 확인된다. 또한 건설 및 기반시설산업, 유통 및 통신, 숙박, 음식점업, 보건의료 분야 등은 제조업에 비하여 표준시간 외 노동(시간제 내지 장시간)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 노동시간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이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표준시간 노동의 확률이 높고 장시간 노동의 확률이 감소하며, 정규직일수록 비정규직에 비하여 표준시간>장시간>시간제 노동의 확률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두 변수 중 어떠한 변수가 노동시간의 유형화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정규직 항의 계수가 커서 변화 확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있으나 두 변수 모두 유효하고 시계열의 길이가 1998년 직후부터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령과 직업에 관한 변수는 모형 1,2와 모형 3의 결과가 상이하다. 모형1,2에서 연령이 높아질 경우 시간제>표준시간>장시간의 순으로 속할 확률이 높은 동시에 연령제곱항은 반대의 부호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준시간 내지 장시간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고령층이 되면 다시 주당노동시간이 감소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 일종의 역U자형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 30세에서 55세 전후까지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높다가 남성의 경우 70세를 전후로, 여성의 경우 55세를 전후로 주당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배규식 2011a)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모형 3에서는 장시간>표준시간>시간제의 순으로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분류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임원·고위관리직·전문직, 관리직·준전문직·기술직, 사무직의 경우 모형 1,2에서는 시간제>표준시간>장시간의 순이고, 모형3에서는 장시간>표준시간>시간제의 순으로 선택확률이 높다. 모형1,2에서는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모든 직군에서 장시간노동보다 시간제를 할 확률이 높고, 판매직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노동보다는 표준시간 노동을 할 확률이 높지만 전문직·고위관리직, 판매직의 경우 표준시간보다 시간제를, 사무직의 경우 시간제보다 표준시간을 할 확률이 높다. 모형3의 경우는 반대로 모든 직군이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시간제보다는 장시간노동을 할 확률이 높고, 고위관리직이나 전문직, 고객센터 및 서비스직, 판매직, 숙련직 및 기능직은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표준시간보다 장시간노동을, 사무직의 경우는 장시간노동보다 표준시간노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동시에 모든 직군에서 단순노무에 비해 시간제보다 표준시간노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모형 1,2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시간근로의 경향을 나타내지만 모형3은 장시간 근로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보여주고, 직업의 경우 세 모형에서 모두 장시간-시간제 간의 선택 확률에 있어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자리의 경우 좋은 일자리일수록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면 연령과 일자리 모두 모형 1,2의 경우가 더 적절한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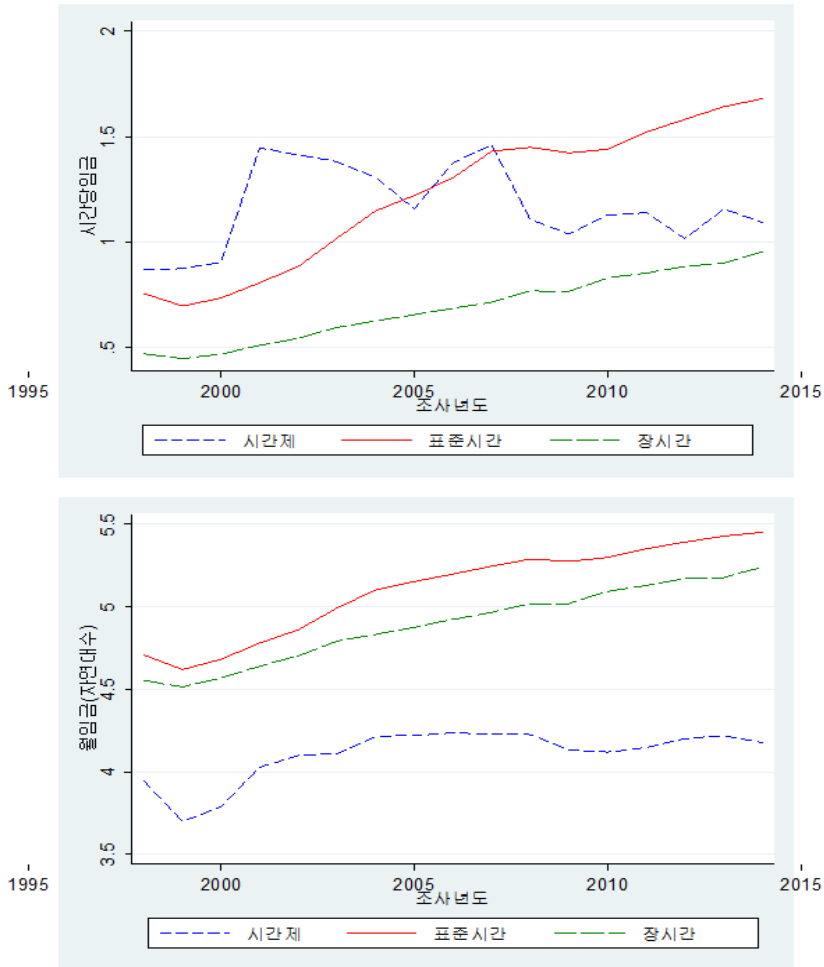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모형 자체의 문제보다 연령, 일자리가 임금체계 등과 관련하여 월임금 및 시간당임금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연관성을 갖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가 대체로 장시간 노동의 비율을 살핀 반면 본 연구는 노동시간을 삼분화하였고, 그 와중에 시간제의 비율이 10% 내외로 작아 장시간-시간제의 선택확률 차이를 계산하는데서 어려움이 비롯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계열의 추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연령 및 직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within 변환과 between 변환을 거친 후 횡단면다항 로짓모형으로 추정을 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유형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를 살피는 것은 계층화의 강화 경향을 판단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 5. 노동시간 계층화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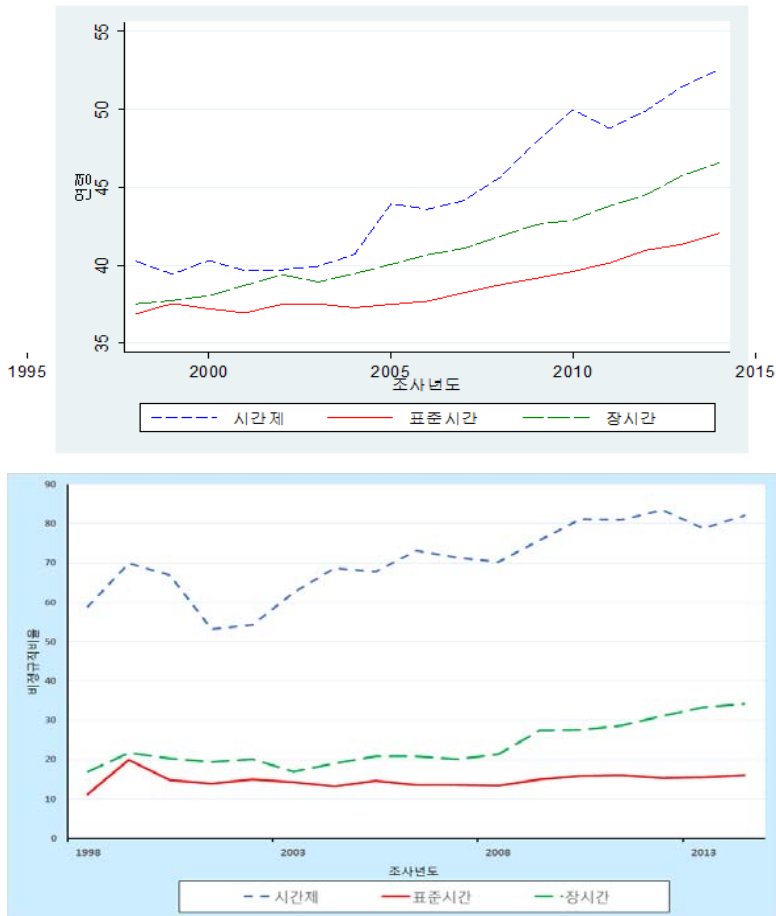
노동시간유형별 시간당임금과 월임금의 추이를 [그림 3]에서 살펴보면, 1998년에는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이 표준시간 및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높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표준시간과 시간제 간의 시간당임금 순위가 역전되어 현재는 시간제의 시간당 임금은 장시간 노동자에 비하여 근소하게 높고, 표준시간 노동자의 경우가 가장 높다. 반면 월임금은 표준시간>장시간>시간제의 순이고 유형별 임금 격차는 커진 상황이다.

[그림 3] 노동시간유형별 시간당임금(위)과 월임금(아래), 1998-2014.



따라서 장시간 근로자가 낮은 시간당 임금을 긴 노동시간을 통해 벌충하여 일부가 월임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동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일부가 월임금 기준 하위소득으로 이동함으로써 노동시간의 삼분화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2000년대 초반의 증가세 이후 정체되어 하락세를 보이며, 장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역시도 증가폭이 표준시간에 비하면 작아 노동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한 계층화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월임금 수준에서 표준시간 노동자와 장시간 노동자의 차이는 크지 않고 일정한 추세이지만 시간당임금에서의 차이가 2000년대 이후로 증가하고 있기에 장시간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4] 노동시간유형별 연령(위)과 정규직비율(아래), 1998-2014.



[그림 4]에서 노동시간 유형별 연령과 정규직의 비율은 시간제 유형에서 고연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모든 유형에서 연령이 증가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고연령의 증가폭은 시간제에서 가장 크며 2005년 이후 그 추세가 가파르다. 시간제 일자리가 취업이전의 15세에서 24세, 그리고 퇴직을 전후한 60세 이후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후자의 원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과 양육 내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혹은 가계구조에 따라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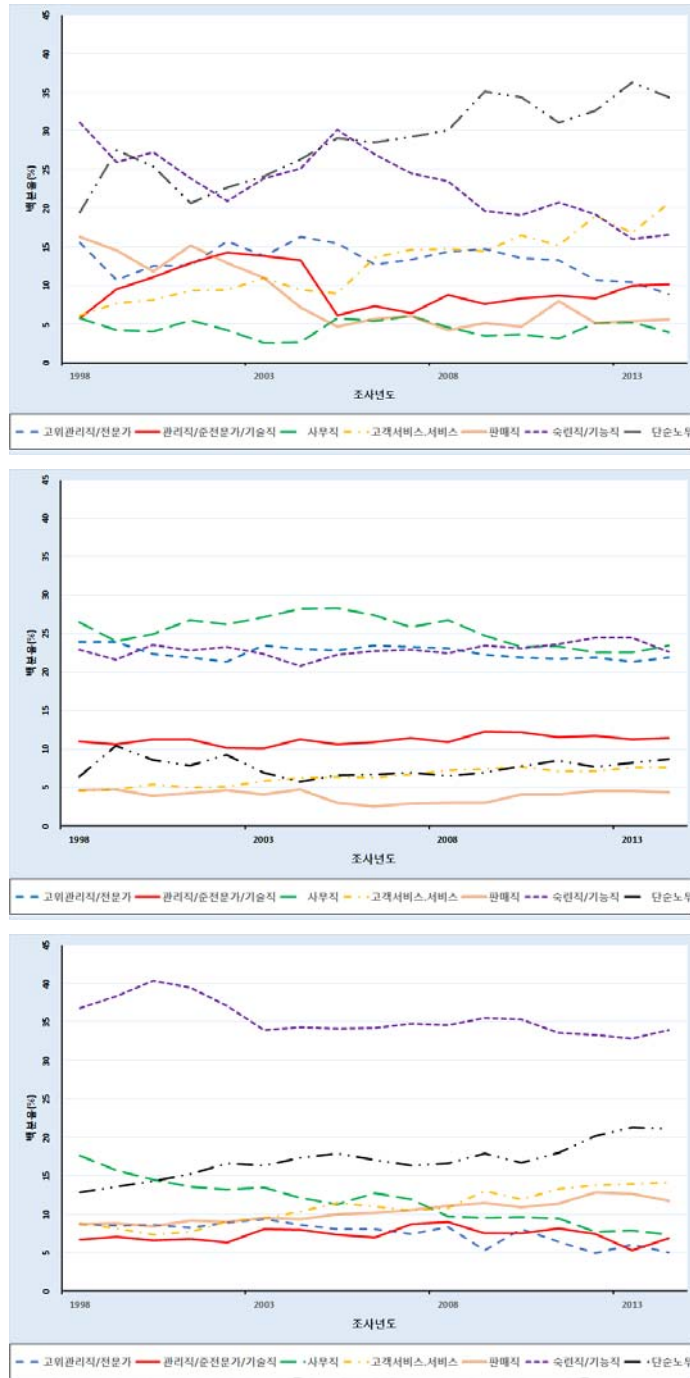
노동시간 유형별 비정규 고용의 형태에서도 시간제일자리 자체가 비정형 일자리의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 문제는 시간제일자리 비정규직 비율이 2000년대 초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1998년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모든 층위에서 비정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지만 표준시간 일자리의 경우는 증가추세가 거의 없으며, 장시간 노동자도 증가추세는 시간제 일자리보다 낮다. 이는 선택적시간제 일자리의 정책화가 아직 미비하고 공론화된 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양질의 선택적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는 노동시간 유형별 직업구성을 보여준다. 연령 및 성별, 직종 및 종사상 지위가 노동시간과 갖는 연관성으로 인하여, 시간제 일자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이다. 1998년 약 20% 정도인 단순노무직의 시간제일자리 비중은 2014년까지 35%로 증가하였다. 1차 년도에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숙련직의 비중은 약 16%까지 감소하여 시간제 일자리에서 두 직군 간의 추세가 역전되었다. 고객센터, 대인서비스를 하는 직종에서 시간제일자리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도 시간제 유형의 추이에서 주목해야 한다. 고객센터 및 단순노무직군의 시간제 증가 추세는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좋지 못한 일자리에 속함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표준시간 일자리에서 고위관리직 및 전문가, 숙련직 및 기능직, 사무직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객센터, 판매, 단순노무직은 비중이 낮다. 표준시간에 관한 도표는 일자리 특성에 따른 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표준시간 일자리의 특성상 크게 비중의 추이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시간 근로에 관한 시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숙련직 및 기능직 종사자의 높은 비중이다. 이는 직군의 특성상 제조업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단순노무직과 판매직, 고객센터서비스직에서 장시간 노동의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단순노무직과 고객센터가 시간제 유형과 장시간 노동에서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점은 해당 직군이 “노동시간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노동시간유형별 직업구성(위-시간제, 가운데-표준시간, 아래-장시간), 1998-2014.



## 6. 정책적 함의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을 중심으로 한 계층에 따라 노동시간의 계층화는 저임금·단시간, 중위소득·장시간, 고소득·표준시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 노동시간의 상대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0%는 시간제에, 중위소득 60%는 장시간 노동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표준시간의 노동은 소득 상위 20%에서 비중이 높다. 둘째,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표준시간>장시간>시간제의 형태로 종사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소득·장시간, 고소득·표준시간의 관계가 관찰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일자리별로 임금격차와 노동시간의 유형별 분포가 크다는 점, 따라서 시간당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다. 셋째, 노동시간 유형에 따라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의 계층화는 강화되고 있다. 시간제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정체 내지 소폭 하락하였으며 장시간 노동의 경우도 정체 내지 소폭 증가에 그치는 반면 표준시간 노동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 격차 역시 크며, 시간제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 역시 증가추세이고 직업별로 일부 직군은 노동시간의 주변부화도 관찰된다. 최근 수저 계급론이 관심을 받았지만 노동시간과 임금을 결합하더라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눌 수 있고 계층화는 굳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의 계층화 현상을 드러낸 연구결과로부터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노동시간 정책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에게는 노동시간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적 시간제 일자리는 해외에서도 “외부자 집단의 외부자”로 불리며(Hakim, 1997), 노동자의 선호보다는 고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강요되는 경우가 많고(Fagan, 2001;253), 근로 빈곤층인 경우가 대다수이다(Messenger, 2004: 47).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미니잡(mini-job)이나 일본의 프리터(フリター, freet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간 레짐의 전반적 특징 중 하나가 저임금을 장시간 노동으로 벌충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지만 하위 20%는 특별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이들 중 다수는 ‘어쩔 수 없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의 비중은 전체 시간제 중 56%로 OECD 국가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전체 고용인구 대비 비자발적 시간제의 비중도 5.8%로 OECD 평균인 4.1%를 상회하여 다섯 번째였다(유병홍 외 2013).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이 취할 방향으로 보인다.

둘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중간에 위치한 소득 60% 집단을 포함하여 나머지 80% 집단에 대해서

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혹은 일자리 만들기를 실현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물론 임금이라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및 중간소득자의 장시간 노동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도 엄연한 시대적 요청이다. 고숙련·고성과의 고진로 사회로 나아감은 물론 복지의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상할 필요도 제기된다.

소득계층별 맞춤형 접근을 넘어 정책의 일반적 원칙을 다시 되새길 필요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3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하는 국제비교의 관행과 달리 48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으로 정의하더라도 한국의 장시간 노동 비중은 높다(Lee et al., 2007).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일자리 만들기, 삶의 질, 행복 등 여러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오래된 원칙과 병행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서 최근에 선택적 시간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선택적 시간제가 기혼여성의 육아 및 양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시간제의 여성 비율은 유럽에 비하면 높지 않다(배규식 2013a). 이는 임금의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택적 시간제 일자리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스는 1930년에 주 15시간만 일하면 되는 세상을 예견했다.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샌더스(Bernie Sanders)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 말을 잇대면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현재로서는 즐거운 공상일 뿐이다. 하지만 주 40시간 노동도 100년 전에는 공상이었다.

■ 참고문헌 □

- 김성희(2001). 노동시간단축,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무엇을 잃고 또 얻는가? 비정규노동. 4, 8-33.
- \_\_\_\_\_(2002). 노동시간단축, 미래를 위한 선택. 이주희(편).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서울: 한울.
- 김승택, 이상민(200).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원식(2004).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보험 정책. 사회과학연구. 18(1). 93-145.
-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4(2). 1-21.
- 김재원(2000).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방향. 경제연구. 21(2). 159-175.
- 김준영, 안준기(2014). 한국 노동시간 미스매치의 규모와 특징: 비자발적 장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3). 105-135.
- 김진욱, 고은주(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남성일(2002).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분석. 노동경제논집. 25(3). 33-78.
- 민인식(2010). STATA를 이용한 패널분석 방법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2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민인식, 최필선(2012).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배규식(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사회. 95. 128-162.
- 배규식, 조성재, 홍민기, 김기민, 전인, 이영호(2011a).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I ).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1b).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개선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백웅기, 오완근(200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효과의 단기분석. 경제학연구. 50(4). 69-100.
- 백학영, 구인회(2010).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0(3). 87-117.
- 안주엽, 이규용(2001).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1).
- 어수봉(2007). 실근로시간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유병홍, 이정훈, 박선진(2013).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 서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28-62.

- 이 건(2001). 제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계량화: 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학*. 35(5). 147-172.
- 이종구(2005). 일본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김인춘, 김학노, 성태규(편). *세계화와 노동개혁*. 서울: 백산서당.
- 이호근(2005). 한국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 근로: 노동시장 유연화, 분절화, 파편화와 비정규근로 대책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김인춘, 김학노, 성태규(편). *세계화와 노동개혁*. 서울: 백산서당.
- 이호근(2013).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사회통합적 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2). 261-304.
- 장유미(2014). 국내 노동시간과 임금간의 관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9). 5487-5494.
- 장지연, 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3. 71-109.
- 전병유(2011). 네덜란드에서의 시간제근로의 현황과 정책. *산업노동연구*. 17(1). 265-291.
- 정이환(2002). 비정규노동의 성격과 그 요인: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국사회학*. 36(1). 83-112.
- 정준구, 박기찬, 정재훈(2009). 주 40시간 근무제가 직무환경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사학*. 24(2). 105-136.
- 정이환, 이병훈, 정건화, 김연명(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최영기(1991). *노동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5). *좋은 교대제는 없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대제 이야기*. 서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Böckerman, P. & Kiander, J. (2002). Has work-sharing worked in Finland. *Applied Economics Letters*. 9. 39-41.
- Bosch, G., Dawkins, P. & Michon, F. (eds). (1994). *Times are changing: Working time in 14 industrialised countries*.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 Fagan, C. & O'reilly, J. (eds). (1998). *Part-time prospec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t-time work in Europe,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Rim*. London: Routledge.
- Fagan, C. (2001). Time, money and the gender order: Work orientations and working time preference in Britain.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8(3). 239-266.
- Figart, D. & Mutari, E. (2000). Working time regime in Europe: Can flexibility and equity co-exist? *Journal of Economic Issues*. 34(4). 847-871.
- Fudge, J. (2006). Control over working time and work-life balance: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nada labour code Part III. A report prepared for the Federal Labour Standard Review.
- Hakim, C. (1997). A sociological perspective on part-time work. In H. Blossfeld & C. Hakim(eds). *Between equ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Women working part-tim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 Handcock, S. & Morris, M. (1999). *Relative distribution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Springer.
- Hinrichs, K., Roch, W. & Sirianni, C. (eds). (1991). *Working time in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working hours in industrial natio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Hochschild, R. & Drago, R. (2001).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Macmillan: Holt Paperbacks.
- Hunt, J. (1999). Has work-sharing worked in German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1), 117-148.
- Jacobs, A. & Gerson, K. (1998). Who are the overworked Americans. *Review of Social Economy*, 56(4), 442-459.
- Lee, McCann, D. & Messenger, C.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and ILO: Geneva.
- Messenger, C. (ed.). (2004). *Working time and workers preferen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nding the bala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ECD (2016).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Reilly, P. (2001). *Flexibility at work: Balancing the interests of employer and employee*. Hampshire: Gower Publisher.
- Robinson, J. & Godbey, G. (1997). *Time for life*. University Park, PA: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Rubery, J., Smith, M. & Fagan, C. (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1), 71-101.
- Schmid, G. (1997). *The Dutch employment miracle: A comparison of employment systems in the Netherlands and Germany*. Discussion Paper FS97-202.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1-40.
- \_\_\_\_\_(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WZB Discussion Paper FSI 98-206.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 Schor, J. (1991). *The overworked American*. New York: Basic Books.
- Seifert, H. (1991).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time reductions in the former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Labor Review*, 130(4), 495.

◀ Abstract ▶

## A Study on the Working-Time Stratification in Korea

Shin, Young Min\*·Hwang, Gyu Seong\*\*

This paper aims to analysis working-time of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ce and the distribution” by a stratum. Classifying working-time into four categories including marginal part-time, part-time work, standard-time work and long-time working, it compares the relative distribution by income quintile. The outcome is as following : 20% of low-ranking income quintile are (marginal) part-time working, 60% from income quintile 2 to 4 are in long-time working and 20% of top-ranking income quintile are in the standard-time working in overall. Working-time classes can be divided up into three: short time-low income of type 1, long time-medium income of type 2 and standard time-high income of type 3. Analysing working time type, the low wage-short time, medium wage-long time and high wage-standard time by the wage per month and low wage-very long time, medium wage-long time and high wage-standard time by the wage per hours are confirmed. Also, stratification of working-time has been intensified in terms of age, jobs and work status. Policy implication from this study is that the increase of minimum wage to the lowest income class and creation of employment by the reduction of working-time to the medium income class could be effective policies.

**Key Words:** working-time, income quintile, types of working-time, part-time job, stratification, inequality.

◆ 2016.07.29. 접수 / 2016.09.08. 1차 수정 / 2016.09.19. 게재확정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Hanshin University